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영구수료 등록생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대학원혁신본부), 02-970-6799

제정 2013. 2. 7.

타규정개정 2015. 6. 5.

개정 2016. 5. 4.

타규정개정 2021. 9. 1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한의 경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사람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. 1.)

- 제2조(자격) ① 영구수료 등록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원의 각학위과정에 영구수료 처리된 사람으로서, 영구수료 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인사람으로 한다.
 - ② 영구수료 등록생 등록은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한다.
- 제3조(제출서류 및 절차) ① 영구수료 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매 학기 시작 70일 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(전공·프로그램)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학과(전공·프로그램) 주임교수는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정해진

- 기한까지 대학원혁신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2021. 9. 1.)
- ③ 대학원혁신본부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정하여야한다. (개정2021. 9. 1.)
- 제4조(등록) 영구수료 등록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5조(등록금 징수 및 활용) ① 등록금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② 영구수료 등록생으로 부터 징수한 등록금은 대학회계 예산에 세입한 다.(개정 2015. 6. 5.)
- 제6조(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) 영구수료 등록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미 합격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.
- 제7조(학과 및 지도교수) ① 학과(전공·프로그램)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유사한 학과(전공·프로그램)로 변경하되,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·프로그램)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교수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제8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시한) 영구수료 등록생은 등록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석사는 4학기, 박사는 6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야 한다.
- 제9조(자격상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수료 등록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 - 1. 영구수료 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
 - 2. 지도교수가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
 - 3. 논문 제출 시한 내에 완성본을 미제출하였을 때

부칙(제170호, 2013. 2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83호, 2015. 6. 5.)

(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1항 및 제8조는 2016학년도 2학기 영구수료 등록생부 터 적용한다.

부칙< 규정 제632호, 2021. 9. 1.> (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 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>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대학원 영구수료 등록 신청서

학과 (전공·프		학 번			
로그램)명		7 1			
성 명	(한글)	주임교수	(인)	학과 · 변경	(변경시) 학과(저공·프로그램) 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
	(한자)	지도교수	(인)		
입학일자		수료일자			
주 소 (연락처)			E-mail TEL		

· 첨 부 : ①사유서/증빙서류(선택) 1부 ②성적증명서 1부 ③지도교수 변경원 1부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장 귀하